

정 정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206호

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6-94('24.02.26.)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“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”의 일부 오기 등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16조 규정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·정비계획 결정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50조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고시합니다.

2026년 4월 16일
서울특별시장

I. 정정 사유

-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기재 내용 중 일부 오기 사항 및 단서 누락 사항을 정정하기 위함

II. 정정 내용

- 지역특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

구분	목표	인센티브 대상	요건	산정 방식	원화량/보상계수	적용량
정정전	산업육성	뷰티·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	• 뷰티·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(디자인 사업자 : 패션, 섬유류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)	정률	0.3	최대 50%
정정후	산업육성	뷰티·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	• 뷰티·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(디자인 사업자 : 패션, 섬유류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) ※ 전체 연면적 중 20% 이상 업종 도입 시	정량	50%	최대 50%

※ 다 인센티브 사항은 2030 서울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따름

※ 산업육성(뷰티·패션 관련 권장업종 도입 시) 항목의 경우 뷰티·패션 특정 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이 수립 완료 시부터 적용 가능

Ⅲ. 그 외 사항은 정정 내용 없음

Ⅳ. 열람장소

- ※ 고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(☎02-2133-4635), 중구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84,-5785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.
-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 도시공간포털(<http://urban/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s://www.eum.go.kr/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